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핵심성장 자산배분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8. 생략 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~ 라. 생략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8. 좌동 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~ 라. 좌동 (신설) 마. KB 그로스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
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상으로 하며 개별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 가. 제2조 제9호 가 목 및 나 목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미만으로 한다. 2. ~ 3. 생략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상으로 하며 개별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 가. 제2조 제9호 가 목, 나 목 및 마 목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미만으로 한다. <u>이 때, 제2조 제9호 마 목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미만으로 한다.</u> 2. ~ 3. 좌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2. 변경(예정)일: 2026년 09월 18일(금)